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인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가공거래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지난달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터인데, 각각의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봤다면 한쪽 부분에 '이게뭔가?!' 하고 궁금해 했을, 알파벳으로 표시된 신고안내 유형을 보았을 것이다. 그 중 'A' 형은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유형으로 모두 10가지 종류가 있었고, 'A-1'은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등과의 거래자를 구분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유형이 A-1이었다고 하여 당초의 거래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거래였음에도 상대거래처의 과거이력 등 때문에 거래가 의심되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개념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하

며,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거래에 대한 제재

양계업자들은 면세사업자인지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나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들이라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앞서 말한대로 매입세액공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면세사업자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합계표가 잘못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해당세액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의 처벌도 가능하다.

3. 거래 시 확인사항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관계가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혹 거래 당시에는 아무 의심 없이 제품을 공급받고 대금도 결제했는데 나중에 해당 거래를 소명하라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상대거래처가 문제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거래처가 폐업자라든가 앞서 말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든가 하면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겠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같은 제의에 무턱대고 거래를 하기 보다는 뒤늦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하거나 상대거래처가 의심스럽거나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① 실제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에는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럽거나 할 때는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간이과세자임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들도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까? 상대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x.go.kr)나 홈택스(www.ho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달리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세무서의 실제자료와 1일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반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실제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쪽을 선택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